보도자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 위헌소원]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 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확인]
- 2.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한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3.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 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2022. 11. 24.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 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들고 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한 사실로 기소되어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상고심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 254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1.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_ 심판대상

○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이하 '선거운동 정의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u>그 밖의 광고물</u>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__ 결정주문

-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 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 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

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선고한 2017헌가1등 결정, 2017헌바100등 결정, 2018헌바357등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현수막의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현수막의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이하 모두 합하여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위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 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농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 개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정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 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 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 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 및 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므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_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선고한 2017헌가1등 결정, 2017헌바 100등 결정, 2018헌바357등 결정에서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포함한 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선례에 따라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확인결정을 선고한 것이다.